

##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

「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3년 3월 3일

완 도 군 의 회 의 장



1. 조 례 명 :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

2. 발 의 자 : 최 정 욱 의원

3. 제정이유

- 완도군 아동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지원계획의 수립, 조사 및 연구(안 제4조, 안 제5조)
-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(안 제6조)

- 위원회 구성 등(안 제7조)
- 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및 놀이공간 조성사업(안 제8조, 안 제9조)
- 민간단체 등의 지원(안 제10조)
-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활동 등 지원(안 제11조)
- 협력체계의 구축 및 포상(안 제12조, 안 제13조)

5. 입법예고기간 : 2023. 3. 3. ~ 2023. 3. 8.

## 6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 군의회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### 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지원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  
(전화: 061-550-5934, FAX: 061-550-5907)

### 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·전화·팩스·직접방문 등

## 7. 기타

-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(전화: 061-550-5934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  
2.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1부. 끝.

#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안 예고명	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		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
	주 소		
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			
「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」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			
년 월 일			
제 출 자 (서명 또는 인)			
완도군의회의회장 귀하			

##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완도군의 아동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
2. “놀 권리”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,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완도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
2. 지원계획 수립 및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 등에 있어 아동의 참여방안

3.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및 접근성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
4.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

5.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

6.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조사 및 연구)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)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

2.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

3.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

4. 놀이문화 확산 사업

5.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

6.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보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

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3.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4. 가정,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
5.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「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」 따른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가 대신한다.

제8조(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과 접근성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놀이공간과 접근성 조성사업은 아동과 지역주민,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.
2. 놀이공간은 성별, 연령,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,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,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.
3.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.
4. 놀이공간은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놀이공간 조성사업) ① 군수는 아동의 참여를 통한 아동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놀이공간 조성 및 접근성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 관련 법인·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

③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조성될 놀이공간 인근 아동·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0조(민간단체 등의 지원)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·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
2.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 지원
3.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1조(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활동 등 지원)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활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(협력체계의 구축)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,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13조(포상)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기관·단체 또는

개인 등에게 「완도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아동복지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,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